

NO. 1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2013	주 의	-	-	-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방식 부적정**

**1. 근 거**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는 모든 입찰자의 기술능력평가를 받아서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및 활용 설계” 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 시에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를 1차, 2차 구분하여 평가하고 1차 평가에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하기로 공고함

※ 유권해석(2013.9.24.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하더라도 일부 입찰자를 평가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며 모든 입찰자가 평가를 받아야 함

**2. 지적내용**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활용 설계”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을 시행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1차, 2차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함
- 재단에서는 동 입찰을 자체 시행하면서 1차 제안서 평가(제안서 서류 심사) 시에는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 중 기술능력평가 배점(85점)을 기준으로 85%(72.25점) 이상인 5개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85% 미만 점수를 받은 3개 업체는 탈락시킨 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 최종평가까지 포함되어야 할 3개 업체가 중도에 탈락되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동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과 입찰가격 점수(20점) 배점한도는 10점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접수 번호	업체명	객관적지표 평가 (20%)	주관적 지표 평가(65%)	합계	선정 결과
1	○○○○	17	56.6	73.6	○
	○○○○				
2	○○○○	20	57.2	77.2	○
	○○○○				
3	○○○○	20	57	77	○
	○○○○				
	○○○○				
4	○○○○	20	44	64	×
5	○○○○	20	44.6	64.6	×
6	○○○○	20	53.8	73.8	○
7	○○○○	18	41.4	59.4	×
	○○○○				
	○○○○				
	○○○○				
8	○○○○	20	54.6	74.6	○
	○○○○				

- [사업경과] -

- 사업명 :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활용 설계 용역
- 발주일자 : 2013. 8. 30
- 입찰서류 등록업체수 : 8개 업체
- 발주금액 : 금 900,000,000원
- 1차 제안서 평가 (2013.10.12)
  - 적격업체(5개 업체)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 탈락업체(3개 업체)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 ○○○○○, ○○○○ 건축사사무소(주),
- 2차 제안서 평가 (2013.10.16.) 1순위업체(낙찰자) : (주)○○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900,000,000원
-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감사일 현재 계약 진행 중

### 3. 조치할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향후 제안서 평가 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고, 관련자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람
-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에 명시된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관련자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관리기간	비 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담당	○○○	2013.7.2 ~ 현재	

NO.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2013	주 의	-	-	-

###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 부적정

#### 1. 근 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기술 평가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평가하고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음

\* 동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배점한도는 10점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제안서 평가 시 항목 및 배점]

구 분	기획재정부 예규상 기술 평가항목	재단 제안서 공고 시 기술 평가항목	배점 한도 (재단)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①기술·지식능력 ②인력·조직·관리기술 ③사업수행계획 ④지원기술·사후관리 ⑤수행실적 ⑥재무구조·경영상태 ⑦상호협력 ⑧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①조직의 안정성(5점) ②용역수행실적(10점) ③기술인력보유상태(5점) ④과업의 이해(10점) ⑤과업 추진체계(15점) ⑥과업추진 계획의 충실성(20점) ⑦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의 활용계획(20점)	85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 점을 초과하지 못함  * 평가항목은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입찰가격 평가			15	

## 2. 지적내용

○ 국외소재문화재단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평가항목 중 ‘③기술인력 보유 상태’ (배점한도 5점 / 보유인력 9인 이상 시 5점)부문에서 2순의 업체의 인력 보유상태가 13명이므로 평가점수가 5점인데도 4점으로 평가함 ※ 업체 순위는 바뀌지 않음

### - [제안서평가 점수 현황] -

평가항목	배 점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2순위 업체 재산정	비고
조직의 안정성	5	5	5	5	
용역수행실적	10	10	10	10	
<b>기술인력 보유상태</b>	5	<b>5</b>	<b>4</b>	<b>5</b>	
과업의 이해	10	9.143	8.857	8.857	
과업 추진체계	15	14.571	14.143	14.143	
과업추진 계획의 충실성	20	17.714	16.571	16.571	
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의 활용계획	20	17.143	18.286	18.286	
소 계(기술평가)	85	78.571	76.857	77.857	
가 격	15	14.7893	15	15	
<b>총 점</b>	100	<b>93.3603</b>	<b>91.857</b>	<b>92.857</b>	

### - [사업 개요] -

- 계 약 명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계 약 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
- 발주금액 : 금 95,000,000원
- 계약금액 : 금 80,190,000원
- 계약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3. 조치할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람

\* 관련자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관리기간	비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담당	○○○	2012.12.20 ~ 현재	

NO. 3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2013	시정	환 수	4,000,000	-

**【제 목】 용역비 과다지급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근거하여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재단 홈페이지 구축을 목적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홍보용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국문과 함께 영문, 일문, 중문에 대하여 번역·검수를 거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외국어 번역비와 검수료로 총 4,000천원을 책정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외국어 번역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외국어 번역은 재단에서 동 사업과 별도로 번역자(3명)를 섭외하고 2013.7.22에 발주하여 납품 받았음에도 용역비에서 외국어 번역비 4,000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국어 번역을 업체에 맡길 경우 결과물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여 직접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고 함

**[사업 개요]**

- 계 약 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홍보용 웹사이트 구축 용역
- 계 약 자 : ○○○○ (대표 ○○○)
- 계약금액 : 금 35,000,000원 (번역료 4백만원 포함)
- 계약기간 : 2012.12.21. ~ 2013.3.20
-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외국어 번역 사업 현황]

- 사업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 발주일 : 2013. 7. 22
- 번역료 : 금 3,400,000원
  - 영문 : 1,000,000원 (○○○ / 납품 2013.10.11.)
  - 일문 : 1,000,000원 (○○○ / 납품 2013.9.6.)
  - 중문 : 1,400,000원 (○○○ / 납품 2013.9.6.)

### 3. 조치할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과다 지급된 4,000천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NO.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2013	개선	-	-	

###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1. 근 거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자체 인사규정(제정 2012.7.27)을 마련하여 시행 있으며, 채용방법은 같은 규정 제6조(채용방법)에 따라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 지적내용

○ 동 재단은 직원을 공개 채용(국외소재문화재재단 공고 제2012-3호/‘12.11.14) 하기 위하여 각 전형별 서류 채용 심사를 하면서 ①전공, ②경력, ③직무 수행 계획서, ④외국어 우대 등 4개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내부 4명, 외부 1명)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면서 ‘④외국어 우대’ 항목은 외국어 분야별 적격 기준점수를 부여하여 정량 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3개 분야는 정성평가를 실시함

- 위 심사항목 중 ① ‘전공’ 심사항목(공고 시 전공제한을 두지 않음)의 경우 응시자의 전공분야가 채용하고자 하는 전형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격 판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으로 심사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판단되나 단지 ‘관련 분야 업무를 포함하는 전공자’ 라는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채점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일 응시자가 심사위원에 따라 전공 심사 항목이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전공’ 분야 심사 시 심사위원 평가 결과〉

\* 예시) 류○○ : A위원(우수), B위원(보통), C위원 (보통), D위원(우수), E위원(보통)

김○○ : A위원(우수), B위원(우수), C위원 (보통), D위원(우수), E위원(우수)

- 또한, ② '경력' 심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경력 등 채용 분야 관련 근무 경력을 사전에 계량화하여 정량평가가 되도록 함으로써 동일 응시자의 심사 점수가 심사위원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재단은 직원 채용 서류심사 시에는 심사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토록하여 일부 응시자의 경력 심사 점수가 동일 응시자임에도 심사위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결과가 발생됨

〈'경력' 분야 심사 시 심사위원 평가 결과〉

\* 예시) 박○○ : A위원(보통), B위원(우수), C위원 (보통), D위원(보통), E위원(보통)

김○○ : A위원(보통), B위원(우수), C위원 (보통), D위원(보통), E위원(우수)

### 3. 조치할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은 향후 직원채용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객관화(계량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NO. 5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2013	통 보	-	-	-

**【제 목】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환수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외소재 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동 재단은 설립(2012.7.27) 이후 감사일 현재(2013.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5 12개 소장 기관 국외소재문화재 약 3,800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대 미술관 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는 도록을 발간 중에 있으며

\* 도록 발간 대상 : UCLA ○○○ 컬렉션, 네덜란드 개인 소장, ○○○대 미술관  
- 이중 환수·활용과 연계되어 진행된 조사는 극히 일부분 (네덜란드 개인 소장 유물, 일본 개인 소장 유물 등 2건)에 국한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이민자 ○○○이 이민을 가면서 가지고 간 유물(988점 조사)의 경우에는 반출 경위가 명확하고 동 유물이 현재 미국 내 ○○○○○ 도서관에 영구 기증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상 수·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체계적인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재단 자체 ‘직제규정’ 별표 2의 ‘조사연구실’ 분장업무에 ‘국외소재문화재 중장기 조사·환수 계획 수립’ 업무가 있으나, 재단 설립 2년차인 2013년 11월 현재까지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조치할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는 조사·환수·활용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외소재문화재 중장기 조사·환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2013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 현황

연번	국가	기관명	일정	조사내용	비고
1	미국	○○○○○○ 도서관	4.8 -4.19	합호용 자료 980점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조사
2		○○○○○ 미술관	6.24 -6.28	한국고가구 192점	나머지 유물에 대한 2차조사 예정
3		○○○대학 ○○박물관	7.2	한국문화재 49점	
4		○○○ 정원	7.5	한국석물 23점	
5		○○○대학교 미술관	8.19 -8.31	한국문화재 450점	
소계				1,694점	
6	네덜란드	개인소장가	6.9 -6.17	한국문화재 500여점	
7		○○○국립 민속박물관	9.23 -10.8	한국문화재 600여점	
8		○○○○○ 국립박물관	10.3	한국문화재 30여점	
소계				1,130여점	
9	일본	개인소장가 ○○(伊藤)	8.10	한국문화재 32점: 청자향아리 등 도자기 30점, 금동불 2점	나머지 소장유물 200여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도록 발간 합의 (2013.8.19)
10		○○대학 ○○○○○기 념박물관	10.14- 10.22	한국문화재 880점	축소조사로 인해 미조사 유물에 대한 2차조사 필요
소계				912점	
11	중국	○○○○○ 박물관	5.9 -5.10	한국문화재 10점	박물관 규정상 연간 10점 열람제한
소계				10점	
12	대만	○○○○○ 국립고궁 박물관	7.25 -7.26	한국문화재 60여점 소장 확인: 본토전래 유물 (청자완), 재일중국인 기증 금동불상 64점	금동불에 대한 자문 실시 (2013.8.2.), 향후 본토전래품 실태조사 합의
소계				60여점	
총계				5개국 12기관 소장유물 3,806여점	